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 엄태영 · 서천호 · 유상범

김장겸 • 박충권 • 조경태

조지연 • 박덕흠 • 주진우

이종배 · 최형두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3
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6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	6
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6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	9
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6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